

제276회 강서구의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12월 3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0 - 129
- 나. 제출자: 송순효 의원 외 6명
- 다. 제출일자: 2020년 11월 3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11월 18일

2. 제정이유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1조~제3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환경교육: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

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 학교환경교육: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¹⁾에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

○ 책무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관련 민간 활동 지원
- 사업자의 책무: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 구민의 책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참여·협력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수립주기: 5년 (강행규정)

○ 계획내용

-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 구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자원조달 방안
-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각 개별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위원회 지문 (안 제5조) : 강서구 환경보전지문위원회의 지문을 구할 수 있음
라.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안 제6조 ~ 제10조)

○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대상: 유치원,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에서의 환경
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체험 및 현장교육 활
성화, 학교 환경 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위탁 (안 제9조)

- 안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안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마. 시행규칙 관련 규정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 제26조

나. 예산조치: 2021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해당부서: 녹색환경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0. 11. 6. ~ 11. 11.)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 정의에서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되,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환경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 범위, 추진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 안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 제4조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제10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과 지원을 권장하고 있음.

- 이에 강서구에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²⁾하고 있으며,
- 서울시 역시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2009. 7. 30.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2) 환경보전시범학교 7개교(초4, 중3), 교육 27회 495명 실시,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95점 공모, 환경일기장 1,300부 제작 10개 초등학교 배부 <2020.10월 말 현재>

※ 2020년 서울시 지역환경센터 지정현황

연번	자치구	단체·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주체	조례제정
1	도봉구	도봉환경교육센터	이대형	도봉구 시루봉로 6길 33	도봉구(민간위탁)	○
2	마포구	(사)자연의벗연구소	이시재	마포구 월드컵로3길 36	비영리법인/단체	×
3	서초구	(사)에코맘코리아	하지원	서초구 바우뒀로27길 7-35	비영리법인/단체	○
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조미란	영등포구 문래로 110	서울시(민간위탁)	×
5	종로구	(사)녹색교육센터	박영신	종로구 혜화로 13	비영리법인/단체	×

○ 타 구에서는 현재 6개구³⁾에서 환경교육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위법령에서 권장 및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서초, 도봉(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동대문, 강동, 성북, 은평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

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8)

② 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